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6월 27일,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문진석)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정기 점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화물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불량으로 밝혀졌으나 현행 정기검사(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제도 하에서는 차량 내부 정비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 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가.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현행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의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 시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로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는 차량별 유효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함.

한편, 자동차 정기점검 제도는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구조 장치 및 부품을 분해하여 점검하고 결함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3년 정기검사와의 검사항목 중복, 소유자의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로 통합·폐지되었음.

그런데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형 화물차에

대한 차량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차량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경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점검을 명령하며, 미이행시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을 재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선, 정기점검 제도는 2013년에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로 통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의 점검 항목, 점검 주기 등의 사항을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서는 사업용 차량 정기점검제도의 재도입시 시간적·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화물 운전자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화물차 장치 결함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행장치(가변축)’에 한정하여 정기점검을 수검하도록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정기점검의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중 일정 중량 이상의 특수자동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중 대여용(렌트카)으로 사용하는 캠핑용자동차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대여용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유사 사고사례를 찾기 어렵고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정해져 있어 일정 차량이 경과한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음으로, 개정안 제3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점검결과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 보이는 바, 과태료 또는 재점검 조치 등의 수단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정기점검결과의 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정기점검 결과의 활용 등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기점검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